

# 영남대학교 건축학부 장학사정 지침

## 제1장 총칙

### 제1조(목적)

이 지침은 영남대학교 장학금규정 및 장학금규정시행세칙, 대학관리장학 사정 지침을 원칙으로 하고, 건축학부가 매학기 장학사정에 필요한 사항을 별도로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### 제2조(적용범위)

① 교내장학금은 총장이 정한 규정 및 대학이 정한 지침을 준수하고 그 이외의 사항은 이 지침에 의한다.

② 교외장학금은 국가기관 또는 장학단체에서 따로 정한 바를 준수하고 그 이외의 사항은 이 지침에 의한다.

### 제3조(건축학부 장학위원회)

건축학부의 장학위원회는 건축학부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3개 전공의 전공주임을 위원으로 구성한다.

## 제2장 교내장학금

### 제4조(교내장학금의 종류)

학교회계에서 지급하는 장학금 중 매학기 대학으로부터 의뢰 받아 건축학부가 장학사정을 실시하고 추천하는 장학금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.

① 우등장학금 중 학업성적우수장학금

② 기여장학금 중 리더십장학금

### 제5조(학업성적우수장학금의 장학생 자격)

학업성적우수장학금의 장학생은 영남대학교에서 규정하는 학업성적 탈락사유(과락, 기준학점 미달, 평점평균 미달 등)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아래의 각 호를 만족하여야 한다.

① 건축학전공 학생의 경우 직전학기 전공학점 취득이 10학점 이상인 자

② 건축공학전공과 건축디자인전공 학생의 경우 직전학기 전공학점 취득이 8학점 이상인 자

③ 건축디자인전공 학생의 경우 직전학기에 건축디자인스튜디오(1)~(6) 중 한 과목 이상 이수한 자

### 제6조(리더십장학금의 장학생 자격)

리더십장학금의 장학생은 영남대학교 리더십장학금 장학생 선발 기준에 만족하고 아래의 각 호에 해당하는 학생으로 제한 한다.

① 건축학부 회장

② 건축학부 부회장

③ 건축학부 여학생회장

④ 건축학부 감사위원장

⑤ 건축학전공 회장

⑥ 건축공학전공 회장

⑦ 건축디자인전공 회장

### 제7조(학업성적우수장학금의 사정방법)

학업성적우수장학금은 제5조의 자격을 갖고 있는 학생을 대상으로 환산석차를 산출하고 영남대학교 대학관리장학 사정 지침을 준수하며 아래의 각 호에 따라 사정한다.

① 본부관리 계속장학, 국가장학금, 외부 재단 장학금 등 대학관리장학 사정 이전에 선발되는 장학금이 수업료를 초과하지 않는다면 장학사정에 따라 학업성적우수장학금을 복수 추천 한다.

② 동점자가 발생 시 다음의 순서에 따라 배정한다. 가) 총 취득학점이 많은 자, 나) 전공 취득학점이 많은 자, 다) 소득분위가 낮은 자

③ 전공별 학업성적4 미만의 잔여 장학금액은 하나로 통합하여 건축학부 장학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전공에 관계없이 우수한 성적의 학생에게 지급한다.

④ 각 전공에서 발생한 대학관리장학 사정 이전의 장학금과 학업성적우수장학금의 차액은 해당 전공에 우선 배정한다.

⑤ 명예장학생에 의해 발생한 포기장학금은 명예장학생 소속 전공에 우선 배정한다.

⑥ 장학금 사정시 출업 잔여 학기가(1개학기 이상) 남은 학생은 장학사정에 직전학년에 포함해서 장학 사정을 한다.

⑦ 장학사정 이후 외부 장학금의 추가 추천으로 인한 학업성적우수 장학금 회수 금액은 해당 전공에 우선 배정한다.

### 제8조(리더십장학금의 사정방법)

리더십장학금은 제6조의 자격을 갖춘 학생을 대상으로 추천한다.